제93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생산 ·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양식장 HACCP 등록 신청 적용대상 추가를 위한 기준 신설(신설) ㅇ 등록 신청 적용 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가기준 신설 ▶생산 ·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의1	1.비중요
2	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 추가 및 직권심의 근거 마련(강화)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 ㅇ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에 산업부장관을 포함하여 직권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화하고, – 외국인투자자의 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 요청할 수 없었던 조항을 삭제하여, – 외국인투자가 안보심의 대상임을 사후 인지한 경우에도 심의 대상 여부 검토 요청이 가능토록 함 ▶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,제5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중요사항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(신설) ㅇ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 ㅇ 중요사항 변경시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품목은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 ㅇ 중요사항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내용, 위반행위 유형 지정 ▶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3조의2	1.중요
4	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 요건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추가 경력 인정 요건 마련)(강화) ㅇ 정보보호 인증심사원, 변호사, 정보관리기술사 등 유관 자격을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위가 주관(위탁)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,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 경력으로 인정함 ▶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판매업자의 기록 · 보관 및 제공 대상 정보 추가(신설) ㅇ 판매업자를 통해서 공급대상자에게 특별관리대상 농약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, 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 · 폐기 조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이력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–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자는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, 품목 등록번호, 바코드를 기록·보존하고 농진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▶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	1.비중요
6	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 확대(강화) ㅇ 운행기록자료 정기적 제출 대상을 현행 “노선 버스”에서 “25톤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”로 확대 *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대형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,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▶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 의무대상 확대(강화) ○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성실·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*을 추가 * ▲관리비, ▲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사항 등 임대인의 의무, ▲임차인의 권리 등 ▶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	1.비중요
8	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 항목 추가(강화) ○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“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[I](주거용 건축물) “에 ▲확정일자 부여일, ▲국세·지방세 체납, ▲전입세대 확인서, ▲최우선변제금, ▲임대보증금 보증, ▲관리비 항목을 추가하고, – ▲현장안내자의 신분 및 ▲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시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였는지를 표기하도록 함 ▶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(강화) ㅇ 가공·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 3종(Salmonella Enteritidis, Salmonella Typhimurium, Salmonella Thompson)을 불검출 기준으로 강화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의3 2.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(강화) ㅇ 날개쥐치, 알로에 아보렌센스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삭제 ㅇ 히비스커스의 꽃받침, 개똥쑥(잎, 줄기), 브레비폴리아유카(뿌리), 아프리카망고(씨앗), 옐로우스위트클로버(잎, 꽃), Black mustard(씨앗), Ceylon cinnamon(줄기껍질, 가지)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으로 전환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, 별표2 3.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(강화) ㅇ 농약 중 시마진(아몬드, 옥수수) 잔류허용기준 수치를 강화*하고 잠정기준을 정식기준으로 설정 * **아몬드**: 0.25(잠정) → 0.01mg/kg(정식), **옥수수**: 0.25(잠정) → 0.05mg/kg(정식)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 개정안 (교육부)	1.사이버대학 일반·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요건(신설) ○ 사이버대학에 일반·전문대학원을 신규 설치 시 설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 인가를 받도록 함 ▶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 제4조 2.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·전문대학원 전환 인가 요건(신설) ○ 운영중인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이 일반·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 인가를 받도록 함 ▶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 제12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
11	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환경책임보험 변경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(신설) ○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인·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구체화(1차 경고, 2차 영업정지 10일, 3차 영업정지 3개월, 4차 영업정지 6개월) ▶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안전검사대상 기계 범위 확대(강화) ○ ‘혼합기’, ‘파쇄기 또는 분쇄기’를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포함 ▶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2.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(강화) ○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건강진단 실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집계하되, 인원제한 기준을 1만명에서 1.3만명으로 확대 적용 ▶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	1.비중요 2.비중요
13	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등의 보고의무 강화(신설) ○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 기한을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강화하고, 의약품 공급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려는 경우까지 보고 범위를 확대 ▶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행정처분 기준 강화(강화) ○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제조업무정지 → 판매 업무정지로 변경 – 안전관리책임자 변경·폐지 미신고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: (1차)경고 → (2차)전품목판매업무정지 1개월 → (3차)3개월 정지 → (4차)6개월 정지 ○ 생산 · 수입 ·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'생산·수입량을 줄이려는 경' 에 대한 보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: (1차) 경고 → (2차)전제조업무정지 15일 → (3차)1개월 정지 → (4차)3개월 정지 ○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: (1차) 해당 품목 허가취소 ▶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4	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행정처분기준 신설(신설)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– (1차) 전 제조(수입)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(수입) 업무 정지 1개월 → (2차) 전 제조(수입)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(수입) 업무 정지 3개월 → (3차) 전 제조(수입)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(수입) 업무 정지 6개월 → (4차) 제조(수입)업 허가취소 ▶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	1.비중요